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무역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다양화 (안 제3조)

지역별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업”을 “기업,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 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원”이란 <u>기업</u> 의 출연금 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 ----- <u>기업, 지방자치</u> <u>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u> <u>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u> <u>른 공공기관으로부터---</u>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연 락 처	(044) 203 - 4041